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2의 가슴기 살균제 사고 막는다

2019년 1월 1일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제2의 가슴기 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려 제품을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살생물제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생활화학

제품안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는 합성세제, 섬유유연제, 살충제 등 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제품의 생산·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기준을 수립한다.

또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사고 발생 시 원인 미상, 부존재 등의 사유로 피해 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운용한다.

환경오염 사고는 넓은 지역에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 피해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피해 지역의 오염 저감 대책,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지원 체계,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 법·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 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대리, 소송비용 등을 환경피해소송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석면 피해 구제업무도 맡게 되면서 가슴기 살균제, 환경오염, 석면 등 환경 분야 피해구제 업무가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됐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환경피해 구제업무를 일임함에 따라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를 본 국민에게 충분한 위로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지원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